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목 차>

1. 제헌절 및 노동절 대체공휴일 적용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작성자	이름	조아진
	담당부서 (과)	복무과		직급	행정주사
	국장	천지윤		연락처	044-201-8436
	과장	김재선		이메일	ajin1228@mail.go.kr

2026. 04. 17.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천지윤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제헌절(7. 17.) 및 노동절(5. 1.) 대체공휴일 적용								
	2.규제조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3.위임법령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제헌절)2026.03.10~2026.4.17 (노동절)2026.04.17~2026.04.2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 제헌절·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제헌절 '26. 2. 10. / 노동절'26. 4. 9.)되고, 시행(제헌절 '26. 5. 11. / 노동절'26. 5. 1.)을 앞두고 있어, 이를 하위법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반영 예정</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제헌절·노동절 공휴일 추진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헌절) 대통령,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제헌절 공휴일 지정 지시(제77주년 제헌절 계기(' 25. 7. 17.) 수석보좌관회의) ▶ (노동절) 대통령, 노동의 가치 기념, 민·관 형평성 및 업무 효율성 등 고려, 노동절 공휴일 지정 지시(' 25. 12. 11. 노동부 업무보고) </div> <p>○ 현행 규정상 ①공휴일 중 국경일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토록 하고 있고, ②전 국민적 차원의 헌법정신에 대한 인식 제고와 노동의 가치 기념이라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제헌절·노동절 대체공휴일 적용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 관련, 대체공휴일 적용은 새로운 공휴일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공휴일이 겹쳤을 때, 해당 공휴일을 회복시켜주는 목적 ※ 향후 5년 중 ' 27년 한 해만 토요일인 제헌절·노동절 대체공휴일 적용 예정 - 또한, 대체공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내수 진작 효과 및 국민 휴식권 증진 등 편익을 고려할 때 제헌절·노동절 대체공휴일 지정 필요 * (관련 참고) 임시공휴일 1일 지정, 소비자출액 2조원/생산유발액 4.2조원 유발('20년, 현대경제연구원) 								
	7.규제내용	○ 제헌절과 노동절 대체공휴일 적용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p>○ 직접적 피규제집단은 없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th> <th style="width: 35%;">유 형</th> <th style="width: 35%;">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관련기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제헌절과 노동절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노동의 가치 존중이라는 공휴일 지정 입법 취지, 내수진작 효과 및 국민 휴식권 보장 등 편익 실현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	-	-	
		피규제자 이외	-	-	-	
		정성분석	서로 다른 공휴일이 겹친 경우 회복시켜주는 것에 불과하여 직접 비용 미발생	내수 진작 효과, 국민 휴식권 보장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국민 행복 증진 등 편익 발생	직접적인 순비용 미발생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공휴일을 회복시키는 것(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에 불과하고, 새로운 공휴일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규정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은 없음 ○ 반면, 제헌절·노동절 공휴일 보장에 따라 ①헌법 정신 인식 제고 및 노동의 가치 기념이라는 입법 취지 실현, ②내수 진작 효과, 국민 휴식권 보장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국민 행복 증진 등 편익 발생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u>국경일 중 공휴일</u>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p> <p>1. (생략)</p> <p>2. <u>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u></p> <p>3. ~ 6. (생략)</p> <p><u><신 설></u></p> <p>7. ~ 11. (생략)</p>	<p>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u>국경일</u>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p> <p>1. (생략)</p> <p>2. <u>국경일</u></p> <p>3. ~ 6. (현행과 동일)</p> <p><u>6의2. 5월 1일 (노동절)</u></p> <p>7. ~ 11. (현행과 동일)</p>
<p>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p> <p>1.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p> <p>2. (생략)</p> <p>3. 제2조제2호·제4호·<u>제6호</u>·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p>	<p>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p> <p>1. 제2조제2호·제6호·<u>제6호의2</u>·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p> <p>2. (현행과 동일)</p> <p>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u>제6호의2</u>·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제헌절) '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時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08년부터 제외
 - '25년 제77주년 제헌절을 계기로 공휴일 재지정* 본격 추진
 - * 대통령 지시사항('25. 7. 17. 수석보좌관회의)
 - '26. 1. 29.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의결 및 국무회의 의결('26. 2. 3. / 2. 10. 공포)
- (노동절) 「舊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 근로자 대상으로만 유급휴일 시행
 - '25. 11월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 변경*되었고, '25. 12월 노동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공휴일 지정** 본격 추진
 -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 및 명칭 변경('25. 11. 11. 시행)
 - ** ① 대통령 지시사항(인사처 소관): 노동절 공휴일 지정
② 국정94번(노동부 소관) 세부이행계획에 '공무원·교원 노동절 유급휴무 보장' 반영
 - '26. 3. 31.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의결 및 국무회의 의결('26. 4. 6. / 4. 9. 공포)
- (대체공휴일 적용) 현행 규정상 ①공휴일 중 국경일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토록 하고 있고, ②전 국민적 차원의 헌법정신에 대한 인식 제고와 노동의 가치 기념이라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제헌절·노동절 대체공휴일 적용 필요
 - 특히, 대체공휴일 적용은 직접적인 피규제집단에 대한 영향이나 비용 발생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규제로서의 영향력이 낮은 반면, 내수 진작 효과* 및 국민 휴식권 보장 등 편익이 큰 점 고려 필요
 - * (관련 참고) 임시공휴일 1일 지정시, 소비지출액 2조원/생산유발액 4.2조원 유발('20년, 현대경제연구원)
 - 아울러, 향후 5년 중 '27년 단 한 해만 토요일인 제헌절·노동절 대상 대체공휴일 적용 예정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제한절과 노동절 대체공휴일 적용
	내용	제한절과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규제대안1	대안명	해당 없음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선택의 문제로 다른 대안 없음)
	내용	해당 없음
규제대안2	대안명	해당 없음
	내용	해당 없음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제한절·노동절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해당 공휴일 보장에 따른 입법 취지 및 내수 진작 효과, 국민 휴식권 보장 등 편의 실현	대체공휴일은 서로 겹친 공휴일을 회복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직접적 비용 발생 등 단점 없음
규제대안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규제대안2	해당 없음	해당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국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제한절: 3. 10.~4. 17./노동절: 4. 10.~4. 17. 및 4. 17~4. 21.) 실시	노동절 대체공휴일 지정 요청	노동절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는 규정 개정 추진
각 부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견조회(제한절: 3. 10.~3. 20./노동절: 4. 10.~4. 17. 및 4. 17~4. 21.) 실시	이견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대체공휴일 확대를 취지로 '21. 7. 7. 제정·공포 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
- 따라서, 전 국민적 차원의 헌법 정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노동의 가치 기념이라는 제헌절·노동절 공휴일 지정의 입법 취지 및 내수 진작 효과 등 편익을 고려,
 - 제헌절과 노동절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안 선택

3. 규제목표

- 제헌절과 노동절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노동의 가치 존중이라는 공휴일 지정 입법 취지, 내수 진작 효과 및 국민 휴식권 보장 등 편익 실현

II. 규제 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제헌절과 노동절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한 입법 취지(헌법정신 인식 제고, 노동의 가치 기념)에 부합
- 대체공휴일 적용을 통해,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산업계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지출 및 생산유발효과를 고려할 때, 국민에게 더 많은 편익이 발생하므로 비례원칙에 부합

* (관련 참고) 임시공휴일 1일 지정시, 소비지출액 2조원/생산유발액 4.2조원 유발('20년, 현대경제연구원)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 없음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요일·날짜 지정 공휴일을 혼합 활용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서, 날짜 지정 공휴일 대상 대체공휴일 적용

구분	일본	미국	호주	영국
공휴일 수	16일	11일	12일	8일
날짜 지정	12일	5일	5일	3일
요일 지정	4일	6일	7일	5일
대체공휴일	날짜 지정 공휴일 전부	날짜 지정 공휴일 전부	날짜 지정 공휴일 전부	날짜 지정 공휴일 전부

○ 타법사례

: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해당 없음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선택의 문제로 다른 대안 없음)>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해당 없음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선택의 문제로 다른 대안 없음)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직접적 피규제자 없음
- 다만, 본 규정을 인용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나,
-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원래 있었던 공휴일을 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공휴일을 추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이 준수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항의 관리감독 주체는 고용노동부이며, '18년 동법 시행령 개정 당시 집행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었음
- ※ '18년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됨(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 '20.1.1.~ / 30인 이상 '21.1.1.~ / 5인 이상 '22. 1.1.~ 적용)

○ 재정적 집행가능성

- '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당시, 고용노동부는 별도의 예산 집행 소요는 많지 않으며 집행 가능한 것으로 분석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제헌절·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제헌절 '26.2.10. / 노동절 '26.4.9.)되고, 시행(제헌절 '26.5.11. / 노동절 '26.5.1.)을 앞두고 있음

《 제헌절·노동절 공휴일 추진 배경 》

- ▶ (제헌절) 대통령,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제헌절 공휴일 지정 지시(제77주년 제헌절 계기('25. 7. 17.) 수석보좌관회의)
- ▶ (노동절) 대통령, 노동의 가치 기념, 민·관 형평성 및 업무 효율성 등 고려, 노동절 공휴일 지정 지시('25. 12. 11. 노동부 업무보고)

2. 향후 평가계획

- 해당없음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 종합결론

- 우리나라 공휴일은 날짜로 지정되어 있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 발생
 - 이에, 제헌절과 노동절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여 두 날의 공휴일 지정 취지를 실현할 필요
- 특히, 대체공휴일 적용은 공휴일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공휴일을 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 '24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1,859h)이 OECD 평균(1708h) 대비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휴식권 보장뿐만 아니라 내수 진작, 생산성 향상 등의 경제적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하면,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한 취지 및 국민 휴식권 보장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내수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제헌절과 노동절 대체공휴일 적용은 합리적인 정책 방안이라고 판단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6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해당 없음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선택의 문제로 다른 대안 없음)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해당 없음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선택의 문제로 다른 대안 없음)>